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김용민*

Yong Min Kim

ABSTRACT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Key Words: Agricultural Corporations,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Tax Incentives

주요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지원제도

* 재능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E-mail: jarakin@paran.com

1. 농업법인의 의의

1.1. 기업농의 추진 경위

농업법인은 종래의 가족농으로서의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기업농이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일 또는 그 사업”으로 정의된다.

김정호, 김태곤, & 조성열(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에 농림부가 설치한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농업기업화 방식이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협업농장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기업농업’ 육성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농지법안에 농업 생산법인과 농사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94년까지 농지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논의 수준에 그쳤다.

1990년을 전후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업에도 기업과 같은 조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89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농 이외의 기업적 농업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되었다.

1998년 농업법인의 설립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되었으며, 2007년 농업농촌기본법의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 농업법인의 개념과 제도적 체계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아 설립되며, 제도의 취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법인의 유형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인에 관한 규정은 < 표1 >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서희열, & 정규언, 2006).

< 표1 > 농업법인의 제도적 체계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설립요건	5인 이상 농업인 조합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준조합원	의결권없음 준조합원의 출자한도 : 제한 없음	비농업인의 의결권 인정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90%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지분에 비례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

도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모두 1표씩 동일하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농업법인의 현황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김보남, 2009).

농업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의 경우 제도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농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이후 소유 제한이 예외로 취급되어 비농민의 소유가 가능하였으나, 간척지의 기업농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양함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농장만이 운영되는 실정이다(서희열, & 정규언, 2006).

2009년 현재 농업법인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농업법인조사 주요지표 현황

구 분	2008년(A)	2009년(B)	증감(B-A)	증감률(B-A)/A,%
법인수(개)	6,306	6,824	518	8.2
- 영농조합	5,075	5,597	522	10.3
- 농업회사	928	940	12	1.3
- 일반회사	56	43	-13	-23.2
- 국가, 지자체 등	247	244	-3	-1.2
종사자수(명)	35,392	37,681	2,289	6.5
판매액(억원)	57,901	72,796	14,895	25.7

주 : 종사자수 및 판매액은 출자자개별운영법인, 일반회사법인, 국가,지자체 등은 제외
 자료 : 통계청, 2009년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먼저 농업법인수는 2009년 6,824개로 2008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법인 형태별로 보면, 신규 영농조합법인은 522개, 농업회사법인은 12개 증가하였으나, 일반회사법인은 수익성 악화로 13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2009년 37,681명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다. 이 중 영농조합법인 종사자는 1,359명, 농업회사법인 종사자는 930명 증가하였다. 판매액은 2009년 7조 2,79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농업생산 이외의 유통업 및 가공업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위탁영농 및 영농대행 수입이 증가하였다.

3.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1.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천 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만큼 법인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3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①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②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축산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회사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68①).

3.2.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초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

작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④, 68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3④).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농업인이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양도한 지분이 총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동 금액에 대한 1일 1만분의 3의 율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⑤, 68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3⑥, ⑨).

농업인이 농지·초지외에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처분 시에 과세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66⑦, 68③).

3.3. 농업법인 출자자의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3②).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③).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68④)

3.4. 농업법인의 농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세법상 미가공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농산물의 가공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12①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6①3)

3.5.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266⑦).

- 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4. 결론

농업법인은 종래의 가족농으로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 후 설립근거법의 변화가 수차례 있었으며, 현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농업법인의 유형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영농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공동 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판매 및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의결권이 모두 1표씩 동일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농업법인의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법인수는 6,824개(영농조합법인 5,597개, 농업회사법인 940개)로서, 종사자수는 37,681명이며 판매액은 72,79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대비 법인수는 8.2%, 종사자수는 6.5%, 판매액은 2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상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법인 출자자의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농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이 그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이러한 조세지원은 농업법인의 활성화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등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과세상 차이에 대하여 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농업외의 소득 중 “1천 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만큼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영어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1천 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만큼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법인세 면제의 범위가 협소하여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영어조합법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한 단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의 경우 FTA 체결의 영향을 농업보다 훨씬 적게 받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에 비해 사업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범위는 현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안준섭. (1992). 영농법인에 관한 일고찰: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 355-396
- 통계청. (2010). 2009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결과
김정호, 김태곤, & 조성열.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 김보남. (2009).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열, & 정규언. (2006).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7(1), 71-88